

총괄요약문

손해사정서 일련번호 : 제2021-01024-01호(위임일자 : 2021.11.30)

제목 : 경기 연천군 청산면 [스팀탱크] 파손 사고 손해사정 보고

1. 이해당사자

가. 신청인

상호 / 소속	메리츠화재(주)	센터명	남부대물	담당자	한 성 희
주 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타워				

나. 피신청인

상호 / 성명	제스 와이테크(주)	주민·사업자등록번호	811-81-01581
주 소	경기 포천시 내촌면 포천로 327-7		

2. 신청인의 배상책임

신청인 사고접수번호 제2021-2779230호 **약관상 면책**

3. 결정 손해액

피해물명	청구금액	결정손해액	신청인(100%)	비 고
스팀탱크	46,200,000	0	0	
영업손실	0	0	0	
합 계	46,200,000	0	0	

4. 지급처

상호/성명	주민(사업자)번호	은행/예금주	계좌 번호	지급액

주) 신분증(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첨부

※신청인 회사는 본 사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해 당사자가 본 사정서를 임의로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손사 제B-167호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대표 손해사정사 유 상



목 차

<손해사정전문>

- 1. 기초사실 ————— 4
 - 가. 보험계약 내용 ————— 4
 - 나. 사고 발생개요 ————— 4

-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 ————— 4
 - 가. 배상책임 발생여부 ————— 4
 - 나. 보험약관상 면,부책 검토 ————— 4
 - 다. 과실비율 ————— 5

- 3. 손해액 산정 ————— 5
 - 가. 일반사항 ————— 5
 - 나. 면부책 검토내용 ————— 8
 - 다. 산출근거 ————— 11
 - 라. 손해심사 결정 세부내역 ————— 11
 - 마. 피해물 확인사항 ————— 12

- 4. 손해사정 수수료 청구내역 ————— 31

- 5. 종합의견 ————— 32

손해심사내용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내용

차량번호	서울07나64**	피보험자	배 * 용
보상한도	100,000,000	유효기간	2021.03.20 ~ 2022.03.20
보험종목	대물배상	특약사항	26세 이상, 누구나

나. 사고 발생 개요

사고일시	2021.05.30 09:00	사고장소	경기 연천군 청산면 공사현장
사고내용	위 일시, 장소에서 피보험차량의 운전자가 스팀탱크를 들어 올리다 피해물에 부착되어 있던 끈이 크레인에 걸려 전도될 위험에 처하자 피보험자의 상황판단에 따라 이를 놓아 피해물이 낙하되며 파손된 사고임.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여부와 범위

가. 배상책임 발생여부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라 안전운전 의무를 부담하나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에 의거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인 것으로 판단됨.

나. 보험약관상 면·부책 검토

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의 보상범위(약관 제6조)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약관에 따라 보상”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으나, 이번 사고는 기명 피보험자 겸 운전자 배재용이 사고 당일 (주)제스 와이테크로부터 금13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스팀탱크(축열조)를 트레일러에서 하역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해당 피해물을 놓아 파손된 사고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 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항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별첨 법률자문 회신서 참조)

다. 과실비율

본 사고는 신청인 회사의 사고조사 내용과 피해자 및 피보험자 측 사고사실 관계 확인 결과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피신청인의 의뢰를 받아 스팀탱크를 하역하던 중 운전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명백하나, 피신청인 또한 사고당시 피해물의 하역작업에 동참하였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과실 또한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이건 사고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과실산정에 대한 실익이 없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과실관계는 별도 검토하지 아니하였음.

3. 손해액 산정

가. 일반사항

- 1) 당사 수임직후 피해자 면담하여 사고내용 확인 결과 피보험차량의 운전자가 피해물을 설치하기 위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던 중 피해물에 달려 있던 끈이 피보험차량에 걸려 전도될 것으로 예상되자 더 큰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상황판단으로 이를 놓아 피해물이 파손된 사고인 것으로 확인함.
- 2) 사고지점은 CS에너지(주)에서 발주하여 (주)한화와 제스 와이테크(주)에서 시공중인 발전설비 공사 현장이며, 피해물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스팀을 저장 및 송출하는 축열기이고, 따라서 이건 사고의 피해물의 소유자는 CS에너지(주)이나, 제스 와이테크(주)에서 사용·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3) 사고 직후 피해물의 손상상태로 미루어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피보험자인 배재용과 평상시 거래관계에 있던 대진텍이라는 회사에서 금 450만원에 보수하기로 하였으나 부도로 인해 부득이 사고현장 스팀 탱크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주)제스 와이테크에서 이를 보수하기로 하였음.
- 4) 제스 와이테크에서는 그간의 진행과정에 따라 원상복구업무를 인계받아 검토한 후 저장탱크에 균열이 없다는 전제 하에 금2,717만원(부가세 포함)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 회사에서 정밀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당사에 손해사정을 의뢰하였음.
- 5) 당사 수입 직후 사고 현장 방문하여 복구업체 김태양 대표를 면담 및 제출받은 견적서를 토대로 파손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사고 내용과 복구범위에 대하여 협의 진행하였음. 복구업체에서는 일단 수압테스트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출하기로 하였고,
- 6) 수압테스트 결과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2~3천만원의 복구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을 진술하고, 2021년 11월 30일 복구업체에서 수압을 걸지 아니한 상태로 물을 채워 점검한 결과 일부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완료 후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여 수정견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음.
- 7) 이러한 사정변경에 따라 영하의 날씨에는 탱크에 물을 채울 경우 얼어버리기 때문에 작업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내년 봄 수압테스트 시행한 후 추가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공사기간 등을 고려 영상의 날씨가 지속될 경우 수압테스트를 진행한 후 손상상태를 확인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 8) 2021년 12월 6일 해당 스팀탱크(축열조)에 대한 수압테스트 결과 충격 부위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복구 작업을 완료한 후 금4,620만원의 수정된 청구서를 제출하고 조만간 시공사와 건축주의 준공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신속한 보상을 요구하였음.
- 9) 한편, 본 건 사고내용과 과실여부 검토 결과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점이 인지되어 2022년 01월 04일 경기도 연천 전곡읍에서 기명 피보험자 겸 운전자인 배재

용을 면담하여 사고사실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고, 신청인 회사 담당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게 되었음.

- 10) 법률자문 회신내용 검토 결과 본 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항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및 ③ 항 "3. 피보험자동차에 실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 11)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사용·관리하던 피해물을 하역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동 조 ③ 항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은 신청인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사고인 것으로 사료됨.
- 12) 이러한 법률자문 결과 토대로 피해자 및 피보험자 측에게 신청인 회사의 보상책임이 없음을 유선으로 안내하고, 2022년 02월 11일 경기도 연천 소재 피보험자의 사무실에서 피보험자와 피신청인 측 직원을 동시에 면담하여 본 건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함을 최종적으로 안내하였음.
- 13) 한편, 피해자 및 피보험자 측에서는 이러한 손해는 크레인 운행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임에도 이를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으며, 크레인 사업자단체(협회)등을 통해 물리적인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주장하였음.
- 14) 이러한 주장에 따라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보상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상세하게 안내하였고, 또한, 건설공사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보상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음.
- 15) 또한,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배재용이 제스 와이테크로부터 피해물의 하역을 의뢰받아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사고당시 제스 와이테크의 지휘·감독을 받아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손해배상금 산정시 피해자측 과실도 고려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안내하였음.

나. 면부책 검토내용

1) 사고 관련 당사자

- 갑 : 배 * 용(기명피보험자 겸 운전피보험자)
- 을 : (주)제스 와이테크
- 병 : CS에너지(주)
- 정 : (주)한화

2) 사고사실 관계

- ① "갑"은 "을"로부터 트레일러에 실려 있는 피해물을 하역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들어 올리던 중 피해물에 달려 있던 끈(운송과정에서 관련 부품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물과 끈으로 결박한 상태)이 피보험차량에 걸려 이를 계속 들어 올릴 경우 피보험차량이 전도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 ② 피보험차량이 전도될 경우 들어 올리던 스팀탱크(축열조)뿐만 아니라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각종 시설물에 전도되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갑"의 판단에 따라 피해물을 놓아 낙하되며 파손된 사고가 발생하였음.
- ③ 건축허가 표지판에 의하면 건축주는 "병"이며 시공사는 "정"인 것으로 확인함. "갑"의 진술에 의하면, "병"이 "을"에게 스팀탱크 등의 설치 업무를 하도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갑"은 사고당일 "을"의 요청에 따라 피해물을 하역하는데 금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해당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함.
- ④ 사고당일은 일요일이라 피해물을 트레일러로부터 하역하는 작업만 진행하기로 하였고 "을"의 현장 직원들과 함께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갑"운전 부주의 또는 더 큰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갑"의 상황판단에 따라 이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진술함.

3) 검토내용

- 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항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한 검토 : **부책의견**

피보험자 배*용은 피해물에 달려 있던 끈이 피보험차량에 걸려 이를 계속 들어 올릴 경우 피보험차량이 전도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만약 피보험차량이 전도될 경우 들어 올리던 스팀탱크뿐만 아니라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각종 시설물에 전도되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스팀탱크를 놓아버린 것으로 이때 피보험자 배재용의 의사는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히는 쪽으로 판단한 것이지, 이러한 피해를 용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면책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고의로 인한 면책을 피하기 위해 적은 손해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을 상대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방치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보험사고의 면책이 되는 '고의'의 범위를 좁히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취지에 따른다면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도 면책 사유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 면책사유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 ②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항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검토 : **면책의견**

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대물배상의 경우,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등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조항을 둔 것은, 위와 같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그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자일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그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 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즉 권리의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겨 책임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 들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이건 사고의 경우 갑과 을의 관계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이나 사고 현장에서 갑은 을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갑은 사용자 을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용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먼저, 위 스팀탱크를 제조한 자는 위 스팀탱크를 제조하여 을에게 운송 할 때까지는 위 제조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것임. 그 후, 을이 위 스팀탱크를 하역하고 이를 설치할 때까지는 제조자의 지배, 관리를 벗어나 을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것임(만약, 제조자가 운송에 관하여 하역까지 책임진다는 계약의 내용 또는 거래 관행이 없는 한 하역작업은 을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보여짐).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스팀탱크를 하역하던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누구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음. 스팀탱크는 이미 이를 설치할 장소에 도착하였고, 위 하역작업은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그 지휘, 감독 아래 행하여 진 바, 제조자로부터 을로 지배, 감독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그렇다면, 위 스팀탱크를 하역하면서부터(하역작업도 을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보임) 이를 설치하여 이전하기 전까지는 대법원 판결에서 의미하는 '을'이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할 정도로 사용, 수익 또는 지배,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을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는 등 을의 피용자인 갑이, 을이 사용, 수익 또는 지배, 관리하는 재물인 스팀탱크를 파손한 것으로 위 면책약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③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항 "3. 피보험자동차에 실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대한 검토 : **부책의견**

서울고법 91나24092의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약관에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실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기중기는 일반화물자동차와는 달리 화물을 적재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 아니고 주로 무거운 물건을 잠시 들어 올려 일정한 장소로 옮기거나 적재하는 것이 주기능이므로, 기중기로

운송화물을 들어 올려 트레일러에 적재하는 도중에 지반이 무너지면서 기중기가 전도되어 위 화물을 파손한 것은 기중기의 고유한 기능 작동 중 발생한 것으로서 통상의 대물사고라 할 것이고 위 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에 실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리 해석하여 유리하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산출근거

본 건 사고는 자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항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사료되므로 손해액의 산출은 제외하였음.

라. 손해액 심사결정 세부내역

- 1) 직접손해
해당사항 없음
- 2) 간접손해
해당사항 없음
- 3) 잔존물
해당사항 없음

마. 사고현장 및 피해를 확인사항(2)



스팀탱크 파손상태(낙하부위)

스팀탱크 파손상태(낙하부위)



스팀탱크 하단부 파손상태



스팀탱크 하단부 파손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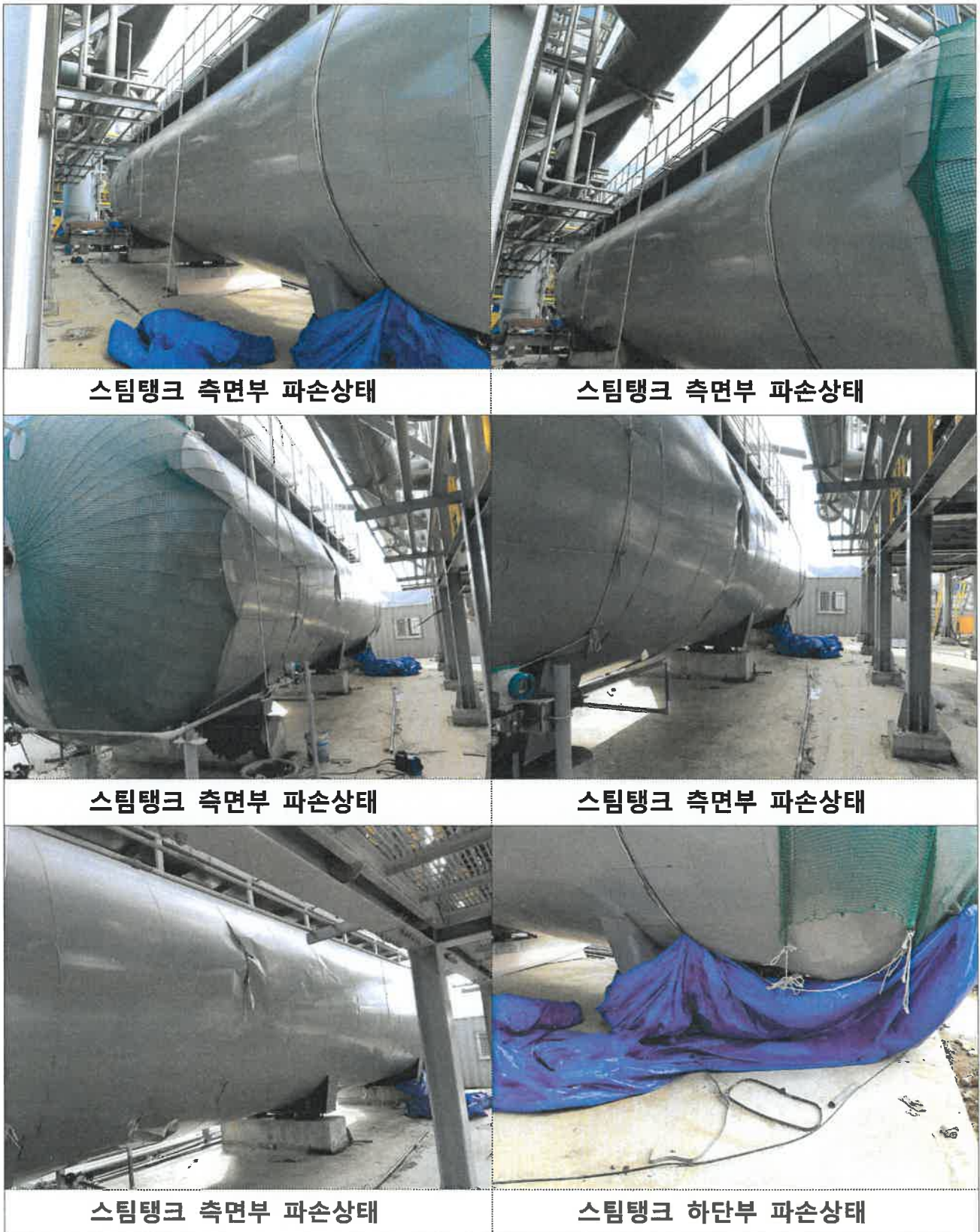


스팀탱크 하단부 파손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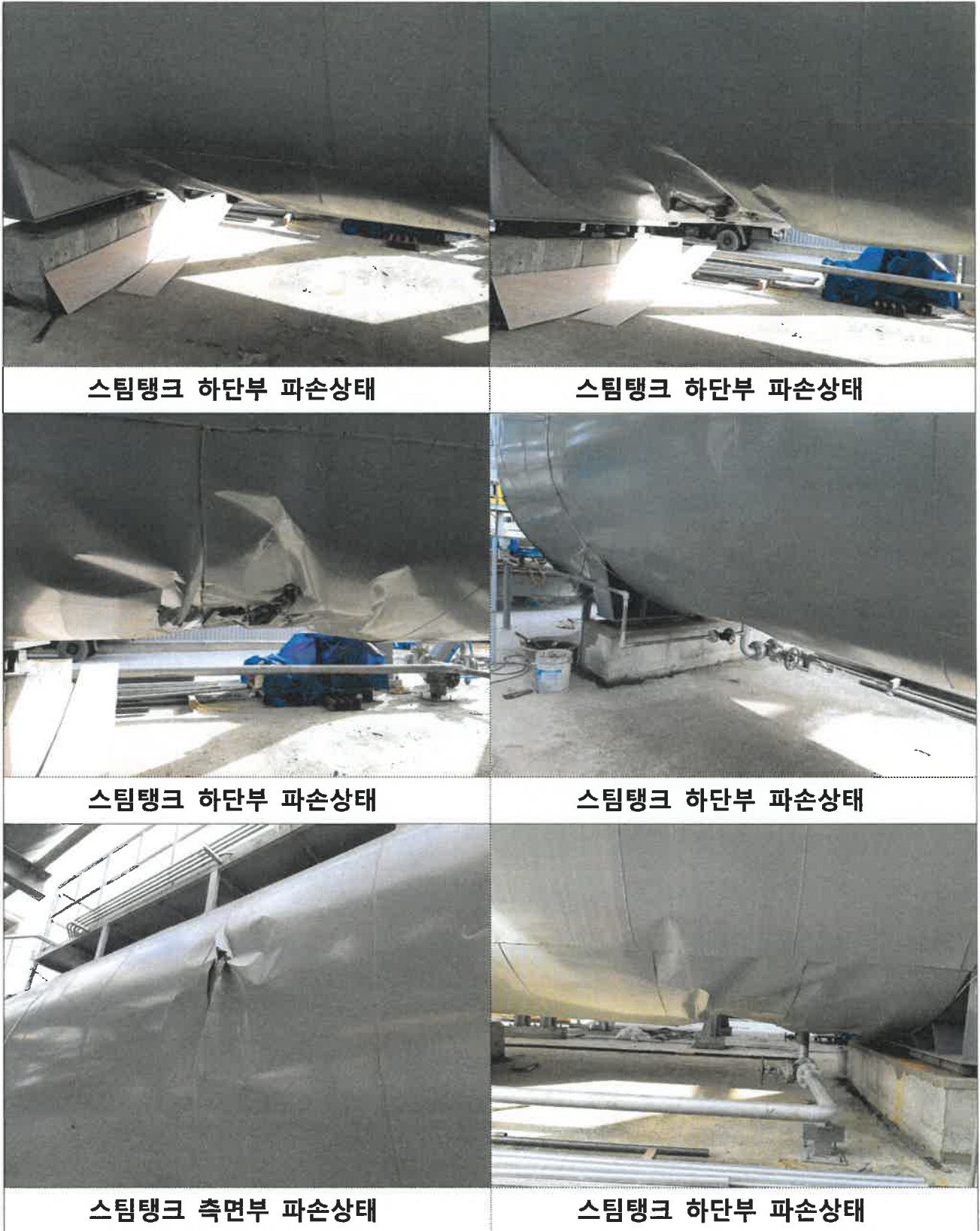


스팀탱크 하단부 파손상태

마. 사고현장 및 피해물 확인사항(3)



마. 사고현장 및 피해를 확인사항(4)



마. 사고현장 및 피해물 확인사항(5)

	
<p>스팀탱크 받침대 보수작업</p>	<p>스팀탱크 받침대 보수작업</p>
	<p>공란</p>
<p>스팀탱크 받침대 보수작업</p>	
<p>공란</p>	<p>공란</p>

마. 사고현장 및 피해를 확인사항(6)

축열조 수압 검사

- ▶ PROJECT NAME : CS에너지 SRF스팀공급시설 제작 설치 공사
- ▶ CLIENT : CS에너지㈜
- ▶ MANUFACTURE : ㈜제스와의테크

- ▶ PART : 축열조 수압 테스트 및 보수 작업
- ▶ ITEM NAME : STEAM ACCUMULATOR

2021. 11. 19 ~ 12. 22

사업주





CS에너지(주)

시공사


JESU TECH

마. 사고현장 및 피해물 확인사항(7)

축열조 수압 테스트 사진대지

공시명 : CS에너지 SAF스틸공급시설 제작 설치공사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1.19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1.19
작업내용	축열조 핸드레일 및 상판 보수 작업.			작업내용	축열조 핸드레일 및 상판 보수 작업.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1.19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1.19
작업내용	축열조 핸드레일 및 상판 보수 작업.			작업내용	축열조 핸드레일 및 상판 보수 작업.		





마. 사고현장 및 피해를 확인사항(8)

축열조 수압 테스트 사진대지

공사명		CS에너지 SRF스립공급시설 제작 설치공사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11.23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11.23
작업내용	축열조 베이스 형틀 제작 작업			작업내용	축열조 베이스 형틀 제작 작업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11.23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11.23
작업내용	축열조 베이스 보수 작업			작업내용	축열조 베이스 보수 작업		

마. 사고현장 및 피해를 확인사항(9)

축열조 수압 테스트 사진대지

공사명 : CS에너지 SRF스틸공급시설 제작 설치공사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11.24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11.25
작업내용	축열조 베이스 보수 작업.			작업내용	축열조 핸드레일 및 상판 도색 작업.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11.29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11.29
작업내용	축열조 중수 작업.			작업내용	축열조 중수 작업.		

마. 사고현장 및 피해를 확인사항(10)

축열조 수압 테스트 사진대지

공사명 : CS에너지 SRF스팀공급시설 제작 설치공사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11.29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11.29
작업내용	축열조 증수 작업			작업내용	축열조 증수 작업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11.29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11.29
작업내용	축열조 증수 작업			작업내용	축열조 증수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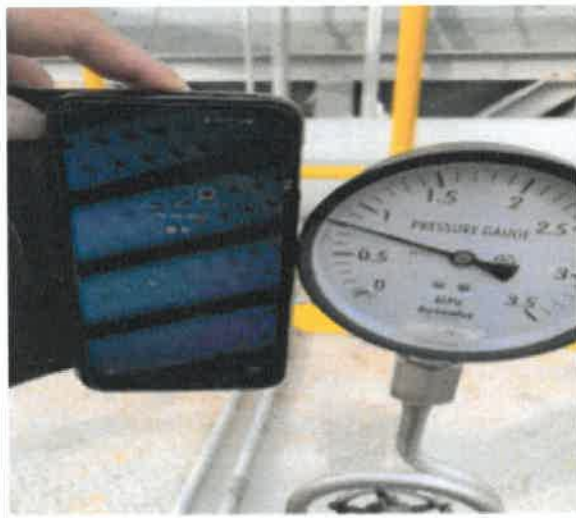

마. 사고현장 및 피해를 확인사항(11)

축열조 수압 테스트 사진대지

공사명 : CS에너지 SRF스틸공급시설 제작 설치공사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06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06
작업내용	축열조 수압테스트 케이싱 누수 확인			작업내용	축열조 수압테스트 케이싱 누수 확인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06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06
작업내용	축열조 수압테스트 케이싱 누수 확인			작업내용	축열조 수압테스트 케이싱 누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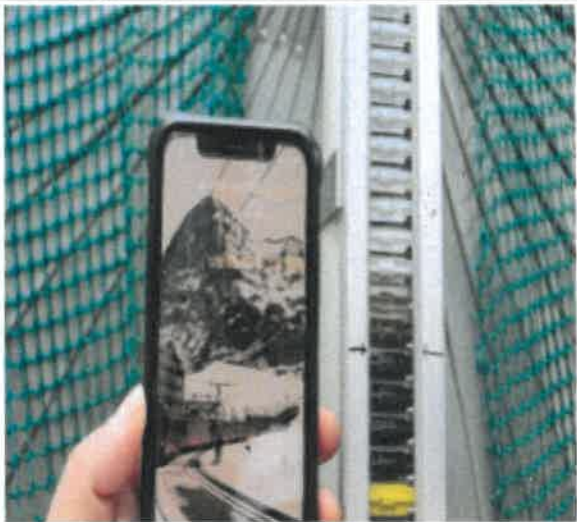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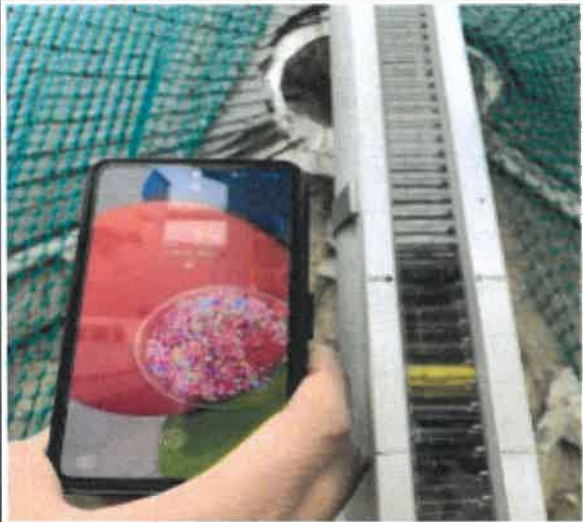

마. 사고현장 및 피해를 확인사항(12)

축열조 수압 테스트 사진대지

공사명 : CS에너지 SRF소입공급시설 제작 설치공사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06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06
작업내용	시간별 압력 게이지 체크 / 오후 12시 31분			작업내용	시간별 압력 게이지 체크 / 오후 13시 31분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06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06
작업내용	시간별 압력 게이지 체크 / 오후 14시 28분			작업내용	시간별 압력 게이지 체크 / 오후 15시 32분		

마. 사고현장 및 피해물 확인사항(13)

축열조 수압 테스트 사진대지

공사명 : CS에너지 SRF스립공급시설 제작 설치공사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06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06
작업내용	시간별 수위 레벨 체크 / 오후 13시 17분			작업내용	시간별 수위 레벨 체크 / 오후 14시 33분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06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06
작업내용	시간별 수위 레벨 체크 / 오후 15시 24분			작업내용			





마. 사고현장 및 피해물 확인사항(14)

축열조 수압 테스트 사진대지

공사명 : CS에너지 SRF스틸공급시설 제작 설치공사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07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07
작업내용	축열조 하부 리크 구간 보완 용접 작업			작업내용	축열조 하부 리크 구간 보완 용접 작업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07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07
작업내용	축열조 하부 리크 구간 보완 용접 작업			작업내용	축열조 하부 리크 구간 보완 용접 작업		

마. 사고현장 및 피해를 확인사항(15)

축열조 수압 테스트 사진대지

공사명 : CS에너지 SRF스틸공급시설 제작 설치공사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17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17
작업내용	축열조 보온재 수청 및 보완 작업.			작업내용	축열조 보온재 수청 및 보완 작업.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17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17
작업내용	축열조 보온재 보온핀 용접 작업.			작업내용	축열조 보온재 수청 및 보완 작업.		




마. 사고현장 및 피해를 확인사항(16)

축열조 수압 테스트 사진대지

공사명 : CS에너지 SRF스립공급시설 제작 설치공사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17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17
작업내용	축열조 보온재 수청 및 보완 작업.			작업내용	축열조 보온재 수청 및 보완 작업.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20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20
작업내용	축열조 케이싱 자재 입고			작업내용	축열조 케이싱 재단 및 제작 작업.		

마. 사고현장 및 피해를 확인사항(17)

축열조 수압 테스트 사진대지

공사명 : CS에너지 SRF시스템공급시설 제작 설치공사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20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20
작업내용	축열조 케이싱 작업.			작업내용	축열조 케이싱 작업.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21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21. 12. 21
작업내용	축열조 케이싱 작업.			작업내용	축열조 케이싱 작업.		

마. 사고현장 및 피해물 확인사항(18)

축열조 수압 테스트 사진대지

공사명 : CS에너지 SRF스틸공급시설 제작 설치공사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12. 12. 21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12. 12. 21
작업내용	축열조 케이싱 작업.			작업내용	축열조 케이싱 작업.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12. 12. 22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12. 12. 22
작업내용	축열조 보수 작업 완료.			작업내용	축열조 보수 작업 완료.		

마. 사고현장 및 피해를 확인사항(19)

축열조 수압 테스트 사진대지

공사명 : CS에너지 SHF스틸공급시설 제작 설치공사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12. 12. 22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12. 12. 22
작업내용	축열조 케이싱 작업			작업내용	축열조 케이싱 작업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12. 12. 22	촬영장소	CS에너지 현장 내	DATE	2012. 12. 22
작업내용	축열조 보수 작업 완료			작업내용	축열조 보수 작업 완료		

4. 손해사정 수수료 청구내역

(단위 : 원)

항 목	산출 내역	금액
수임료	손해사정 수임료 : 1,727,000원 (46,200,000 × 3.74%) ※ 본 건 면책사고로 청구액 기준 수임료 산정함.	1,727,000
경 비	1. 일 비 : 30,000 × 3회 = 90,000원 - 1회 : 2021.11.23 피해물 확인 및 손해액 조사(연천) - 2회 : 2022.01.04 피해물 확인 및 손해액 조사(연천) - 3회 : 2022.02.11 피해자 및 피보험자 면담 (연천) 2. 왕복교통비 : 116,000원 - (166.4Km / 8 × 1,861.6원) × 3회 = 116,000원 3. 왕복통행료 : 0원 - 0원 × 3회 = 0원 4. 법률자문 수수료 : 385,000원(세금계산서 첨부) 5. 합 계 : 591,000원	591,000
합 계	* 백원 단위 이하 절사	2,318,000
지급처	* 예금주 :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 사업자등록번호 : 106 - 86 - 30223 * 지급처 : 우리은행 016-285800-13-101	

5. 종합의견

본 건 사고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항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

본 손해사정은 보험업법 제185조 및 동법 제188~189조에 의거하여 민법 제750조, 자동차보험 약관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손해사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통상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였음.

단,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어느 일방의 소제기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음.

2022. 02. 14.

조 사 자 : <손해사정사 >

황 병 철 (인)



심사결정 : <손해사정사 >

유 상 현 (인)



■ 첨부서류

1. 피해물 수리견적서(최종)	6부
2. 피해물 수리견적서(최초)	5부
3. 피해물 제작 도면	4부
4. 피보험자 사고사실 확인서	1부
5. 사고당시 사고현장 상태	1부
6. 법률자문 수수료	1부
7. 법률자문 회신서	13부
8. 피해자(복구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2부
9. 피해자 사업자등록사항	1부
10. 출장비 산출 근거	1부

1-1. 피해물 수리견적서(최종)

견 적 서

메리츠화재

귀중

한성희 차장님

서기 2021년 12월 6일

아래와 같이 견적 합니다.

내역유효일(Validity Date) : 30 일(day)

완공일시(Delivery Date) : 21 일(day)



제스아이테크

사업자 NO : 811-81-01581

대표 이사 : 김태양

주 소 : 경기도 모현시 내촌면 모현로 327-7

금액 : 일급사전이백만원
₩42,000,000 **정**
 (부가가치세별도)

결제조건 : 완료 후 100% 현금 결제.

※ 서비스 제품 ※
배기가스 정화설비 (FOT)
기계 & 배관 (관로) 공사
기계 설비 공사
TMS & CMS & 환경 계측기

사업명 : 축열기 연양 시 사고로 인한 보수 공사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금 액
보수 공사	LOT	1	42,026,300	42,026,300
(단위 불사)	LOT	1	26,300	26,300
합 계				42,000,000
<p>☞ 특이사항</p> <p>1) 축열기 신규 제작 시 약 4억원, 보수 및 정검으로 대체, 2) 수입테스트 후 누수 발생으로 인한 보수 비용 추가.</p> <p style="text-align: right;">• 견적 담당자 • 담당자 : 김태양 대표 연락처 : 010. 7703. 4256</p>				
합 계			₩	42,000,000

원가계산서

사업명 : **후원기 인양 시 사고로 인한 보수 공사**

1-2. 피해물 수리견적서(최종)

종류	품명	요율(%)	금액	산출근거	비고
재료비	직접재료비	28.59%	12,016,400		
	간접재료비				
	소계		12,016,400		
노무비	직접노무비	42.72%	17,954,000		
	간접노무비	0.00%			
	소계		17,954,000		
	기계경비	17.74%	7,456,400		
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소계		7,456,400		
	계		37,428,900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4.45%	1,671,340	(재료비+노무비+경비)*5%	
	이윤	6.49%	2,728,174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합계	100.00%	42,028,300		

집계표

사업명 : 육원기 인양시 사고로 인한 보수공사

1-3. 피해물 수리견적서(최종)

품명	단위	수량	개요액		노무액		견비		합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수평 콘크리트 BODY 보수공사	식	1	4,880,000	4,880,000	4,980,000	4,980,000	294,000	294,000	12,134,000	12,134,000	
요.그라우팅 작업	식	1	1,290,000	1,290,000	120,000	90,000	82,000	82,000	2,482,000	2,482,000	
요.보관료 보수공사	식	1	3,992,400	3,992,400	10,754,000	10,754,000	7,200,400	7,200,400	21,840,800	21,840,800	
[합 계]				12,211,400		17,294,000		7,486,400		27,452,000	

1-5. 피해물 수리견적서(최종)

	PIPE FITTING	LOT	1												
수 계		LOT	1		6630.000	6280.000		224300		13134000					
합 계		LOT	1		6630.000	6280.000		224300		13134000					
주요재료명															
21. 그라우팅 후임															
그라우팅 후임	그라우팅 600	LOT	1	1.270.000	1.270.000										
	벽사기 결합 (2회 운반비 포함)	LOT	2												
22. 그라우팅 후임															
그라우팅 후임	그라우팅 600	LOT	4	230.000	230.000										
	그라우팅 600	LOT	1	230.000	230.000										
시공비															
	보통	LOT	1												
	보통 소모성 자재	LOT	1												
수 계		LOT	1		1,500.000	910.000		31.000		2,662.000					
합 계		LOT	1		1,500.000	910.000		112.000		2,662.000					
3. 복원재료 수량															
31. 복원재료 보수공사															
보수재료	SAFETY WOOD 80x1100	m	80	10.000	420.000										
보수재료	0.1T. A1	m	100	12.000	1,380.000										
합계 및 소지	사공 부위 합계 및 견적서	m				21.000	4120.000	11,200	1,792,000	30,200	6,112,000				

2-1. 피해물 수리견적서(2차)

견 적 서

메리츠화재 **귀중**

한성희 차장님

서기 2021년 11월 18일

아래와 같이 견적 합니다.



주제스아이테크

주제스아이테크

사업자 NO : 811-81-01581

대표 이사 : 김태양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대원면 포천로 327-7

내역유효일(Validity Date) : 30 일(day)

완공일시(Delivery Date) : 14 일(day)

금액 : 일곱이천사백칠십만원
 ₩24,700,000 원
 (부가가치세 별도)

결제조건 : 계약금 20%, 납품 후 80% (15일 이내)

서비스 제목
 배기가스 정화설비 (FGT)
 기계 & 배관 (관로) 공사
 기계 설치 공사
 TMS & DMS & 환경 계측기

사업명 : 축열기 인입 시 사고로 인한 보수 공사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보수 공사	LOT	1	24,789,900	24,789,900
(단위 필수)	LOT	1	89,900	89,900
합 계				24,700,000

▶ 특이사항 1) 축열기 신규 제작 시 약 4억원, 보수 및 점검으로 대체.

* 견적 담당자 *
 담당자 : 김태양 대표
 연락처 : 010. 7703. 4256

합 계	₩	24,700,000
-----	---	------------

2-2. 피해물 수리견적서(2차)

원가계산서

사업명 : 특별기 인양 시 사고로 인한 보수공사

구분	품명	포함(%)	금액	비고
제순비	최검제유비	29.71%	7,240,000	
	간섭제유비			
	소 계		7,240,000	
	직접노무비	46.51%	11,590,000	
노순비	간접노무비	0.00%		
	소 계		11,590,000	
	기계경비	13.39%	3,320,000	
	사채부담금			
경비	교통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상여연금부담금관리비			
	기타경비			
소 계		3,320,000		
합계		22,090,000	기준비(노무비+경비)	
합계관리비		1,104,500	(제순비+노무비+경비)*5%	
미운		1,595,450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합계		24,789,900	100.00%	

한국재해보상관리공단/2021-11-18 14:37

2-3. 피해물 수리견적서(2차)

시업명 : 속원기 민방 시 사고로 인한 보수공사

집계표

구분	종류	수량	기준액		노무비		합계	합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수입 콘크리트 보수 공사	1	3,530,000	3,530,000	4,210,000	4,210,000	152,000	152,000	7,992,000	7,992,000
2	기타유발 견적	1	1,500,000	1,500,000	820,000	820,000	32,000	32,000	2,452,000	2,452,000
3	무단변경 보수 견적	1	2,210,000	2,210,000	6,450,000	6,450,000	3,126,000	3,126,000	11,748,000	11,748,000
합계				7,240,000		11,530,000		3,320,000		22,090,000

리카온화재해상자자동차손해사정(주) / http://recaon.co.kr/ ☎ 02)757-9561 Fax 0505-362-0160

2-4. 피해물 수리견적서(2차)

사업명 : 죽령기 인양 시 사고로 인한 보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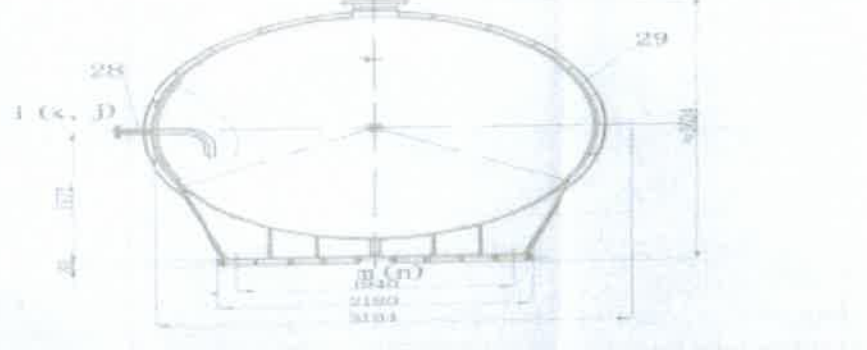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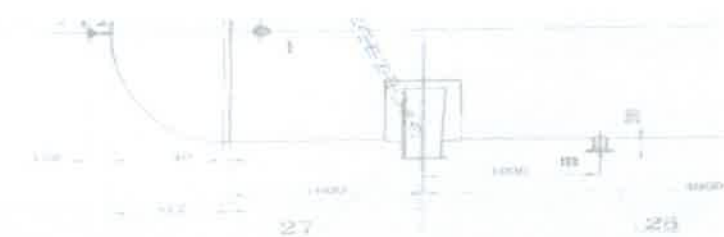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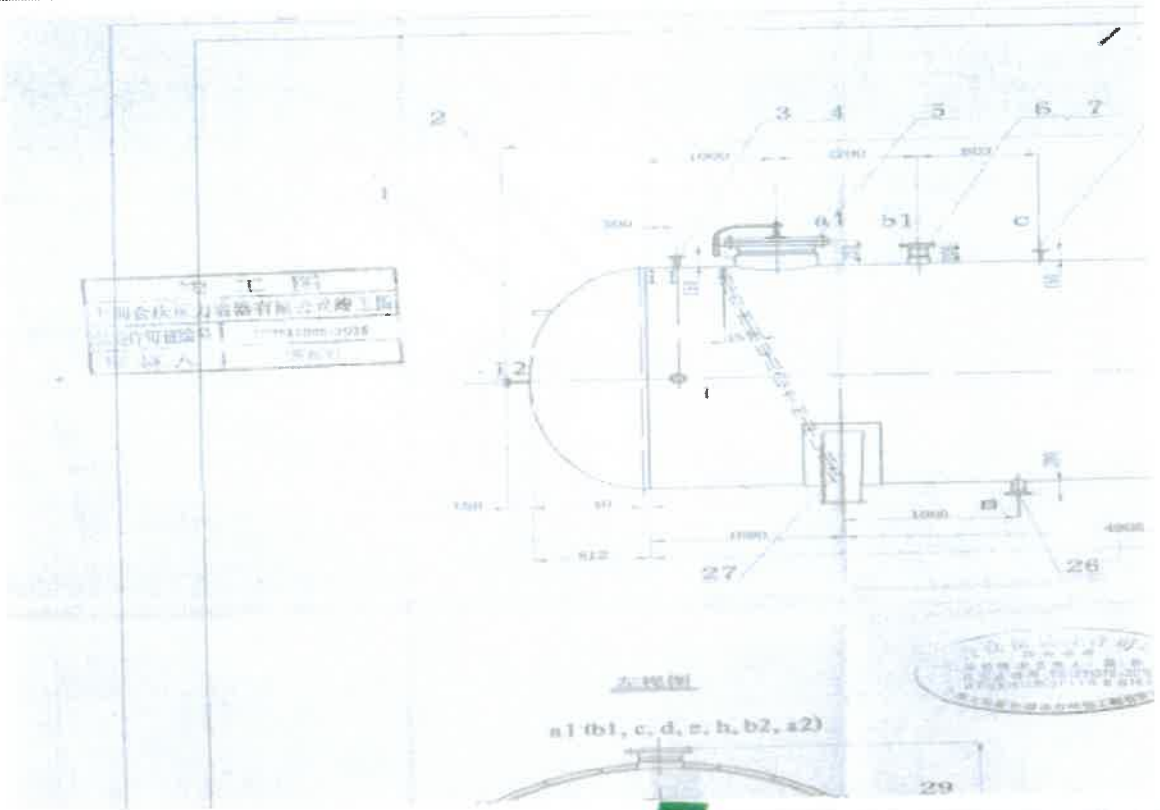
내역표

구분	종류	금액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장비		총액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수질 테스트 및 BODV 보수 공사												
	1.1 수질 테스트 및 BODV 보수 공사												
	수질테스트용 인양차 사용	50㎡	LOT	4	45,000	180,000					9,000	1,300,000	
	수질테스트용 인양차 사용 (인양)	50㎡	LOT	4	750,000	3,000,000					250,000	3,250,000	
	수질 검사 비용	인양	LOT	1	N/A	70,000					70,000	70,000	
	수질 테스트 인양차	인양차	M/D	3		730,000	690,000	41,000	291,000		230,000	2,191,000	
	인양차	중형차	M/D	2		2,100,000	2,100,000	8,000	91,000		250,000	2,441,000	
		모조물	M/D	4		190,000	1,520,000	4,000	64,000		150,000	1,734,000	
	포대 차량	300kg	LOT	1	1,480,000	1,480,000					2,400,000	3,440,000	
	+		LOT	1		1,500,000	4,240,000		152,000		780,000	7,002,000	
	합계		LOT	1		2,100,000	4,270,000		152,000		2,180,000	7,192,000	
	2. 그라우팅 작업												
	2.1 그라우팅 작업												
	2.1.1 그라우팅 작업	그라우팅 작업	LOT	3	1,200,000	3,600,000					1,470,000	2,240,000	
	2.1.2 그라우팅 작업	그라우팅 작업	M/D	4		2,800,000	920,000	8,000	32,000		290,000	451,000	
	2.1.3 그라우팅 작업	각부품 인양차 등 사용비	LOT	1	210,000	210,000					350,000	280,000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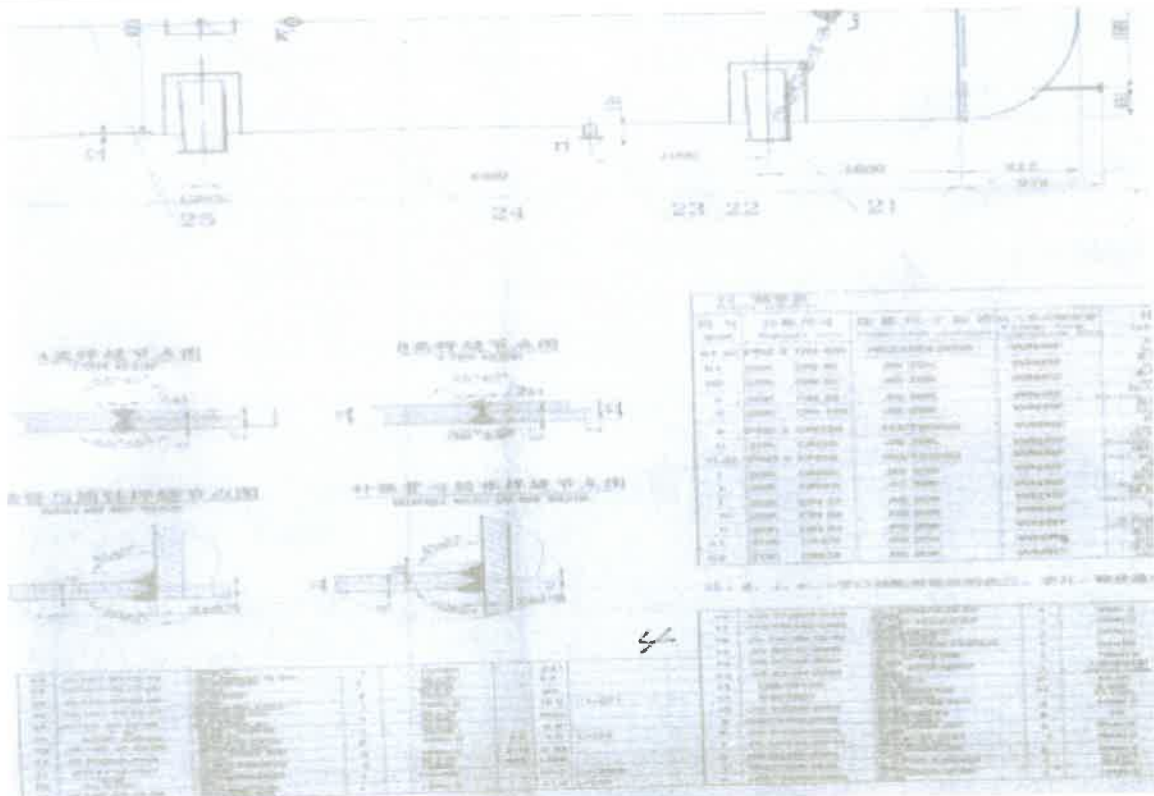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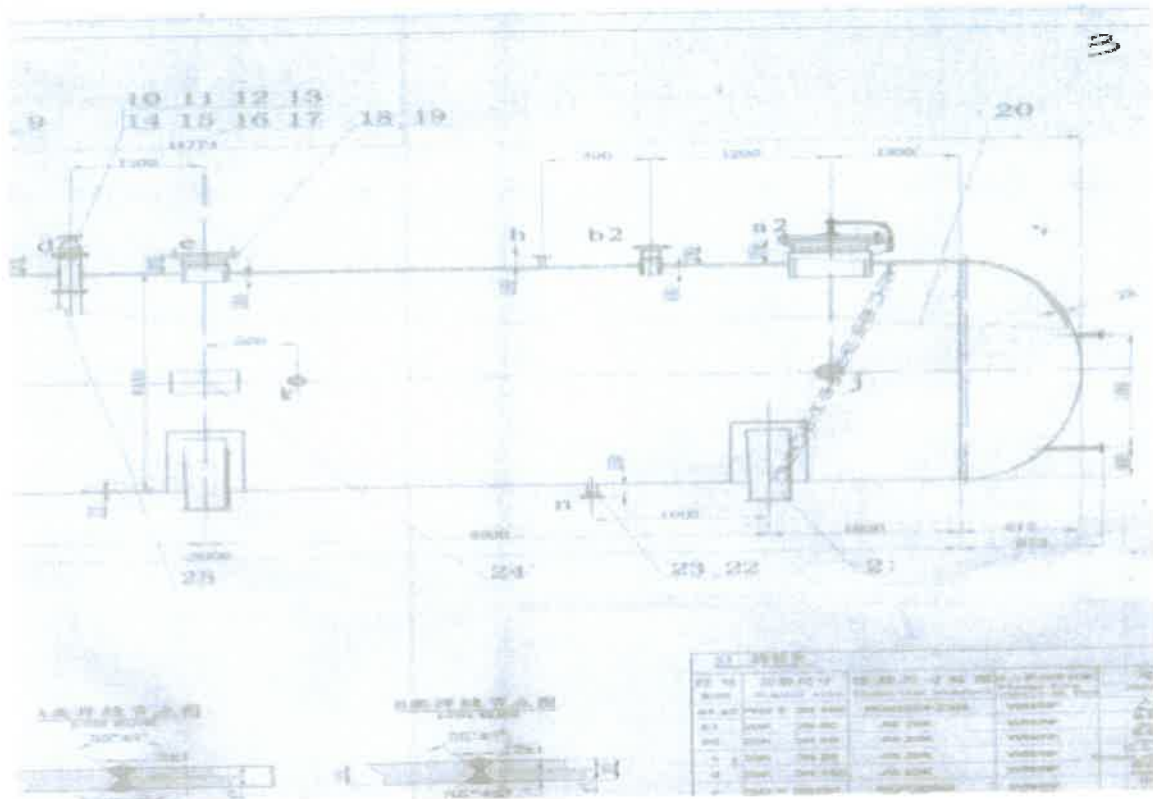
남부파워인슈어런스(주) 2021-11-18 14:57

3-1. 피해물 제작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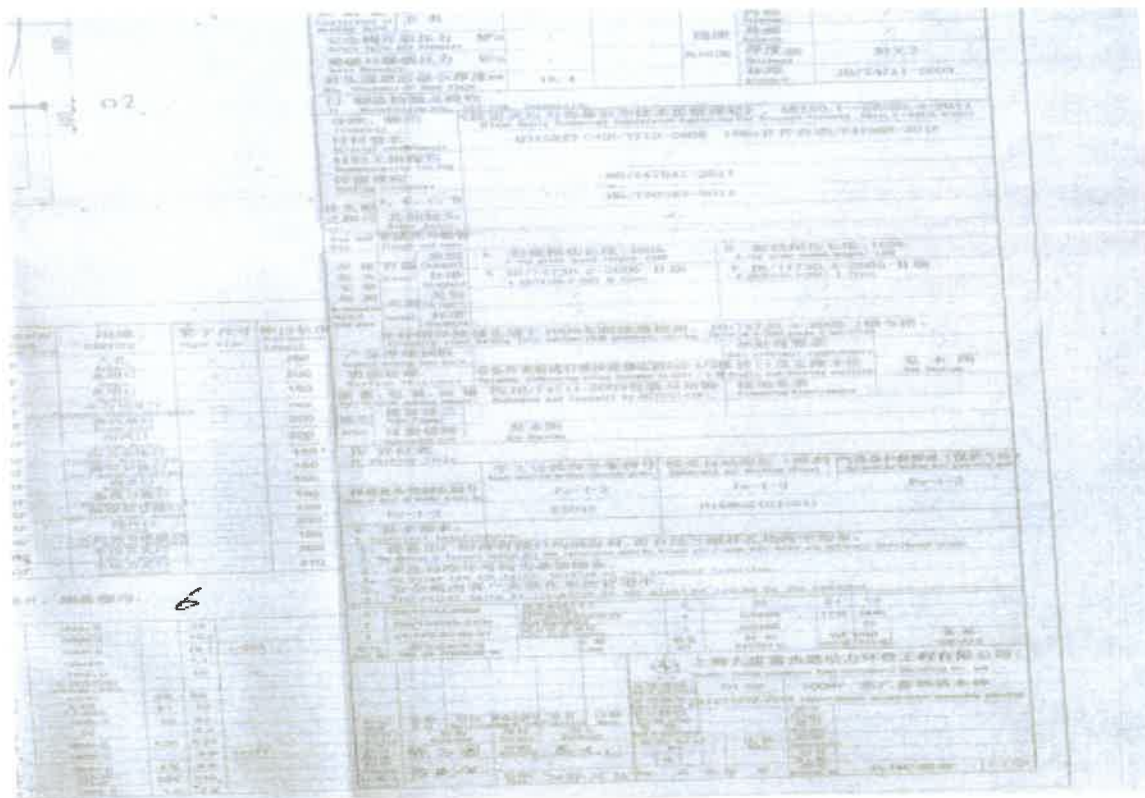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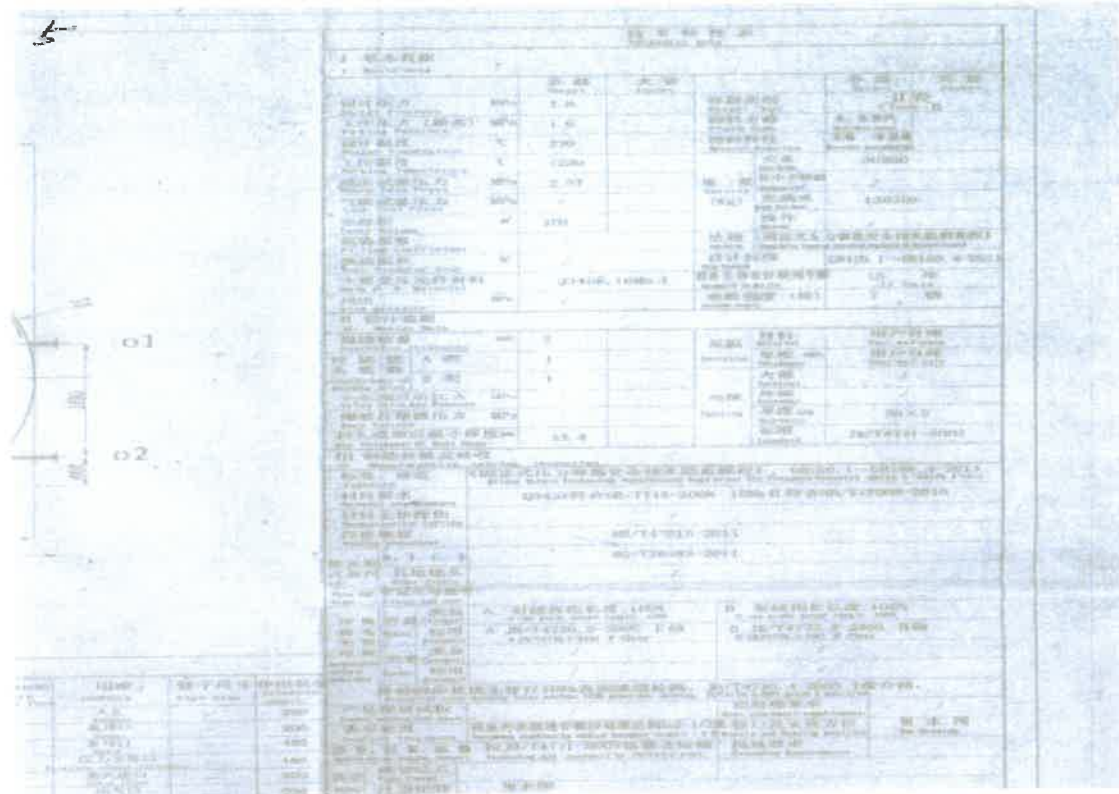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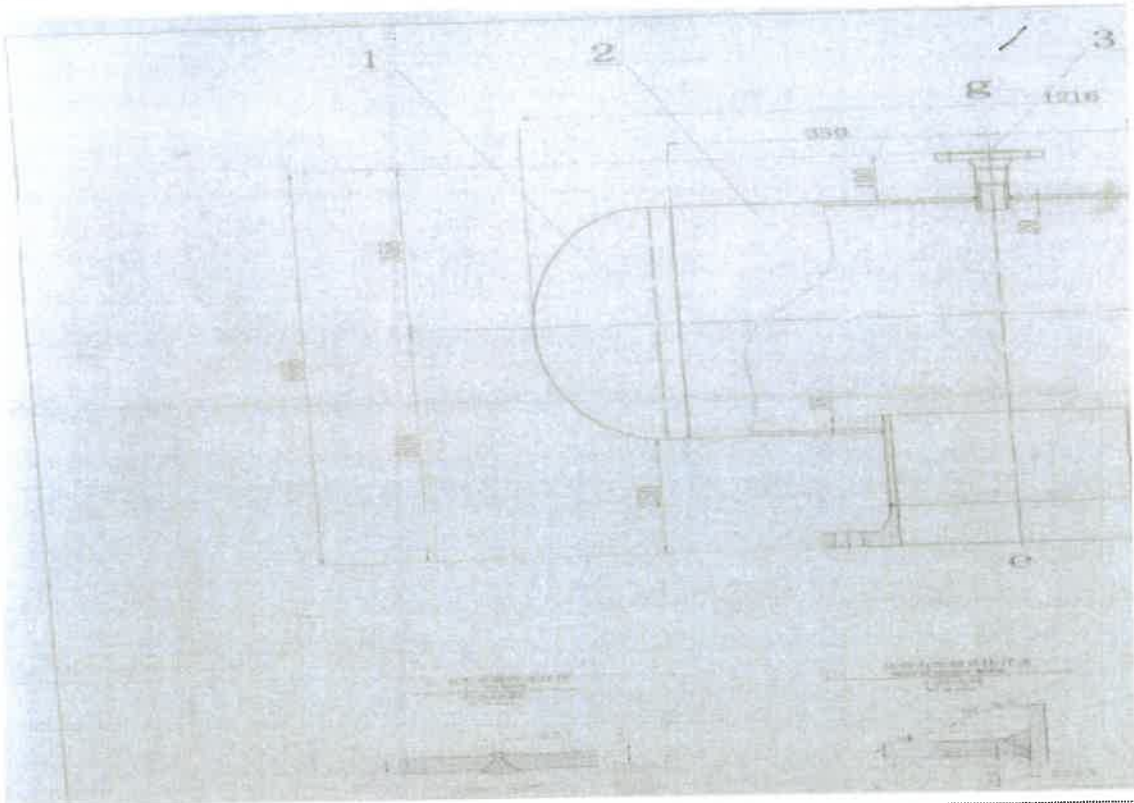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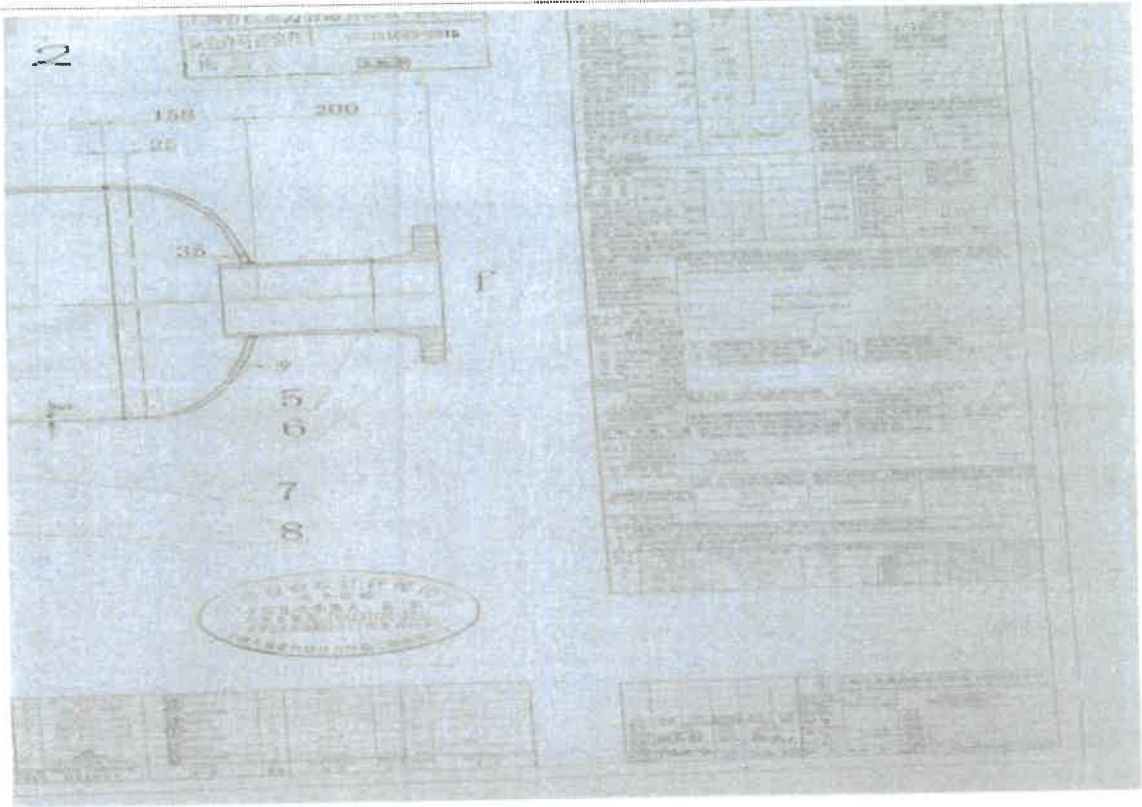
3-2. 피해물 제작 도면



3-3. 피해물 제작 도면



3-4. 피해물 제작 도면



4. 피보험자 사고사실 확인서

사고사실 확인서

성명 : 김재용
주민번호 : 701025-

상기 본인은 메리츠화재(주) 보험가입차량인 서울07나6447차량의 소유자로서 2021년 05월 30일 09시 00분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발생한 스틸탱크(축열기) 파손사고와 관련하여 사실대로 답변합니다.

1. 정확한 사고일시와 장소, 운전자는 누구이며, 사고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사고일시 : 5월 30일 09시경
- 사고장소 : 평산면 스틸탱크연료탱크
- 운전자 : 김재용 (피보험자와의 관계 : 본인)
- 사고내용 : 축열기 탱크 파손으로 발생한 사고

2. 사고당시 피보험차량을 운행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리오하이로부터 스틸탱크 하차 작업 요청 받아서 하차 작업 중 사고

3. 사고당시 피해물을 운반하는데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됩니까?

리오하이입니다

4. 피해물을 운반하는데 따른 비용은 얼마이며 누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까?

리오하이 * 13,000,000

5. 피해물(축열기)의 소유자는 누구이며, 사고당시 누가 관리 및 감독을 하게 됩니까?

시이오 에너지 오트라에 관리 하는 리오하이

상기 진술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2년 1월 4일

위 본인 김재용 (서명)

5. 사고당시 사고현장 상태



6. 법률자문 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				송신번호	20220117-41000115-a123fov5					
공 급 자	등록번호	264-81-26845		공사업장번호	등록번호	106-86-30223		공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법무법인 도원		성명	휴대번호	상호(법인명)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성명	류상현
	사업장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5길3 매니발딩 4층 (서초동 1696-13)		업태	서비스	등록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806, 807호(가산동, 호서대벤처타워)		업태	서비스
	이메일	hnl3481@maver.com		업태	서비스	등록	서비스		업태	서비스
	이메일	hnl3481@maver.com		이메일	7579551@recaon.com		이메일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령사유	비고						
2022-01-17	350,000	35,000	해당없음	자문료(L22-109, 자동차 대문사고 법률자문)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1	17	자문료				350,000	35,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와상대수금		이 금액을 (원) 할			
385,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1. 법률자문 회신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5길 3 에니빌딩 4층 (서초동) (우)06604

TEL: (02) 3481-6540 FAX: 02-3481-6541

Law Firm Do-won

번호 : L22-109
 수신 : 리카온손해사정(주)
 참조 : 황병철 담당자님
 발신 :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임웅한
 날짜 : 2022. 1. 12.
 제목 : 하역 중 하역물 파손 사고에 대한 면, 부책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 법률질의에 대하여 회신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만약 회신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전화 02-3481-6540, 팩스 02-3481-654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회신내용은 귀사의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자료로 사용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외부에 유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포함 총 13 매

7-2. 법률자문 회신서

법률법인 도원
Law Firm Do-Won

I. 사안의 요지 및 질의내용

1. 사안의 요지

- 일시 : 2021. 5. 30. 9시 00분경
- 장소 :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대로 246
- 관련사 : 갑 - 배○○(피보험자 겸 운전자), 을 - ㈜네스와이테크, 병 - CS에너지㈜, 정 - ㈜한화

가. “갑”은 “을”로부터 대구에서 사고현장까지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운송해 온 피해물(스팀탱크)을 하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트레일러에서 이를 들어 올리던 중 피해물에 달려 있던 끈(트레일러 운송과정에서 피해물의 관련 부품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물과 끈으로 결박한 상태였음)이 피보험차량에 걸려 이를 계속 들어 올릴 경우 피보험차량이 전도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나. 피보험차량이 전도될 경우 들어 올리던 피해물(스팀탱크)뿐만 아니라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각종 시설물에 전도되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갑”의 판단에 따라 피해물을 놓아 내하되어 과손된 사고가 발생하였음.

다. 건축허가 표지판에 의하면 건축주는 “병”이며, 시공사는 “정”인 것으로 확인됨. “갑”의 진술에 의하면, 시공사인 “을”에게 스팀탱크 등 관련 시설물의 설치 업무를 하도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갑”은 사고 당일 “을”의 요청에 따라 피해물을 하차하는데, 금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본 하차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진술함.

7-3. 법률자문 회신서

법무법인 도원
Law Firm Do-Won

라. 사고당일은 일요일이라 피해물을 하역하는 작업만 진행하기로 하고 “을”의 현장 직원들과 함께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갑” 운전 부주의 또는 더 큰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갑”의 상황판단에 따라 이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진술함.

2. 권의 내용

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항 “1. 보험계약사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

사고 당시 기명피보험자 겸 운전자인 “갑”이 피해물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피해물에 설치되어 있던 줄이 피보험차량에 걸려 피보험차량이 전도될 위험이 처하자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들어 올리던 피해물을 놓았다고 진술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약관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항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

사고 당일 “갑”은 “을”로부터 피해물 하차작업의 대가로 금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을”의 현장직원들과 함께 피해물의 하차작업을 진행하던 중 더 큰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갑”의 상황판단에 따라 이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을”

7-4. 법률자문 회신서

법무법인 도원
Law Firm Do-Won

을 동 약관에서 정한 “갑”의 사용자로 보아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자동차보험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항 “3. 피보험자동차에 실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

유사 관례(서울고법 91나24092)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약관에 배상배상의 경우 “보험자동차에 실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기중기는 일반화물자동차와는 달리 화물을 적재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 아니고 주로 무거운 물건을 잠식 들어 올려 일정한 장소로 옮기거나 적재하는 것이 주기능이므로 기중기로 운송화물을 들어 올려 트레일러에 적재하는 도중에 지반이 무너지면서 기중기가 전도되어 위 화물을 파손한 것은 기중기의 고유한 기능 작동 중 발생한 것으로서 통상의 대물사고라 할 것이고 위 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에 실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를 달리 해석하여 약관 제8조 3항 3호의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상기 3가지 사항 검토결과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에 해당할 경우 피해물(스틸탱크)을 관리하고 있는 “을”의 이건 사고에 대한 과실 정도.

II. 회신의견

7-5. 법률자문 회신서

법무법인 도원
Law Firm Do-Won

1. 이 사건 사고를 갑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아 면책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스티밍탱크 하역작업에 관하여 갑은 을의 지시, 감독을 받고 작업을 하는바 피용자의 위치에 있고, 워 스티밍탱크는 차량에서 하역할 때부터 설치한 후 인도하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을의 사용, 수익 또는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이는바, 워 면책약관에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워 고등법원의 주요 판단의 근거는 이 사건 사고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달리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워와 같이 면책인바 그 책임비율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Ⅲ. 구체적 검토

1. 결의 가항에 대한

가. 고의의 의미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고의'의 의미에 관하여는 대법원에서 수 차례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7-6. 법률자문 회신서

법무법인 도원
Law Firm Do-Won

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등 다수).

즉, 고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입면서(인식), 이를 행하는 정리상태(용인)이라는 두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고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1]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면책약

7-7. 법률자문 회신서

법무법인 로윈
Law Firm De-Won

권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도주하는 자동차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면서 지하철공사장의 현재 h법에 부딪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경찰관이 달리던 차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현재 h법에 부딪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리라고는 예견·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운전자의 고의는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고의일 뿐, 식물인간상태까지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자신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동승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동승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혈 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수혈 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피해자의 고의(수혈거부)가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고의로 면책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 6 -

7-8. 법률자문 회신서

법무법인 도원
Law Firm Do-Won

이 사건 사고를 보면, 갑은 피해물에 달려 있던 끈이 피보험차량에 걸려 이를 계속 들어 올릴 경우 피보험차량이 전도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만약 피보험차량이 전도될 경우 들어 올리던 스티밍탱크뿐만 아니라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각종 시설물에 전도되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스티밍탱크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이때, 갑의 의사는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히는 쪽으로 판단한 것이자, 이러한 피해를 용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면책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고의로 인한 면책을 피하기 위해 적은 손해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을 상대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방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보험사고의 면책이 되는 '고의'의 범위를 좁히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취지에 따른다면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도 면책사유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면책사유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결의 사항에 대한

가. 위 약관의 취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위 약관의 취지를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7-9. 법률자문 회신서

법주법원 포워
Law Firm De-Won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대물배상의 경우,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등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조항을 둔 것은, 위와 같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그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자일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그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즉 권리의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겨 책임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대법원 권시사항에서 위 약관의 취지를 명확히 관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위 약관에 관한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672 판결

위 보험약관에서 대물배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면책조항을 두는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

- B -

7-10. 법률자문 회신서

법무법인 도원
Law Firm Do-Won

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며,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조항 상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관리하는 재산'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소유, 사용, 관리의 의미에 관하여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 수익 또는 지배,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부산고법 1994.11.18. 선고 94나2329 판결

지세자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차주이자 기사가 운송회사에 운전기사부 중기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그 회사의 작업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그 지세자를 운반하여 화물을 미적하는 과정에서 5시간 전에 이적한 듯한 화물을 운적하여 그 화물을 손상한 경우, 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첨부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7-11. 법률자문 회신서

법주법인 도원
Law Firm Do-Won

▶ 이미 적재작업을 완성한 적재물에 대하여는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산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4011 판결

그러나 피해 오토바이들이 이 사건 2 면책조항이 정한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사용자인 소외 2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용증거들만으로는 소외 2가 피해 오토바이들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수리점을 운영하는 소외 2가 고객의 의뢰를 받고 그 수리를 위해 피해 오토바이들을 보관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그렇다면 소외 2는 수리용역의 완성이라는 부수적인 이익을 위하여 피해 오토바이들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서 이를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1) 갑과 을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이나 사고 현장에서 갑은 을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갑은 사용자 을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용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을의 소유, 사용, 관리

7-12. 법률자문 회신서

법무법인 도원
Law Firm Do-Won

한편, 스티밍탱크가 을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물건인지 살펴봅니다.

먼저, 위 스티밍탱크를 제조한 자는 위 스티밍탱크를 제조하여 을에게 운송할 때까지는 위 제조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후, 을이 위 스티밍탱크를 하역하고 이를 설치할 때까지는 제조자의 지배, 관리를 벗어나 을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만약, 제조자가 운송에 관하여 하역까지 책임진다는 계약의 내용 또는 거래 관행이 없는 한 하역작업은 을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종적으로 을이 스티밍탱크를 설치하여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을의 지배, 관리를 벗어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스티밍탱크를 하역하던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누구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티밍탱크는 이미 이를 설치할 장소에 도착하였고, 위 하역작업은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그 지휘, 감독 아래 행해졌는바, 제조자로부터 을로 지배, 감독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스티밍탱크를 하역하면서부터(하역작업도 을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설치하여 이전하기 전까지는 대법원 관점에서 의미하는 "을" 이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할 정도로 사용, 수익 또는 지배,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을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은 등 을의 피용자인 갑이, 을이 사용, 수익 또는 지배, 관리하는 물건인 스티밍탱크를 과

7-13. 법률자문 회신서

법주법인 로윈
Law Firm Do-Won

손한 것으로 위 면책약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권의 다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지반이 침하되는 바람에 갑자기 기중기가 전도되어 그 화물이 파손된 사건으로 재판부는 기중기의 고유한 기능의 작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여 면책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고등법원 판결에서 중실을 두는 판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고등법원 판결을 달리 해석하여 유리하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권의 라항에 대한

위와 같이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바 과실의 정도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갑은 을의 지시, 감독을 받고 작업을 하는 자일뿐으로 을의 과실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상 -

8-2. 피해자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예금주(Name)
(주)제스하이테크 님

계좌번호 **333-058992-01-011**
(Account No.)

예금종류 **병생주거래기업통장**
보통예금


중소기업은행 

통장일련번호 **2**

신규일 **2019** 년 **07** 월 **08** 일
발행일 **2019** 년 **07** 월 **25** 일

신규점 **시흥유동** ☎ **02 808 2050**
발행점 **시흥유동** ☎ **02 808 2050**

IBK
S
I
N
G
I
N
G
A
T
U
R
E
S
E
R
V
I
C
E
M
E
N
T


IBK기업은행

서명지권시에는 본인확인일 무효
실명인증 표시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BC 검체	인터넷 뱅킹	텔레 뱅킹	계좌 이체	지출 이체	CD 카드	이체 뱅크
○					○	○

인터넷뱅킹
www.ibk.co.kr

◆은행별 코드 안내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기업	003	상호저축	050	제	주
경남	030	새마을금고	045	카카오뱅크	090
광주	034	수원	007	케이뱅크	089
국민	004	신한	005	KEB하나	081
농협은행	011	신협	048	한국씨티	027
단위농협	012	우리	020	도이치	025
대구	021	우체국	071	S O A	020
부산	032	S C 제일	023	알비에스	056
산업	002	전북	037	H S B C	054

i-ONE뱅크

스마트폰에서뱅킹서비스,
상품가입, 자산관리까지!



앱다운로드 : one.ibk.co.kr
(모바일전용)

※ Play 스토어, App Store 에서
"i-ONE뱅크" 검색

텔레뱅킹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 **1588-2588**
☎ **1566-2566**

◆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 및 코드

서비스 종류	코드
무통장입금 조회	111
잔액 조회	112
담·타행 송금	211
텔레뱅킹 비밀번호 설정	911

*담·타행 송금은 텔레뱅킹에 가입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의 환

◆ 기업은행 영문명 : INDUSTRIAL BANK OF KOREA
◆ SWIFT CODE : IBKOKRSE

대한민국정부
인 지 세
100원
당대분세무서장
최승민 02-808-2050

9. 피해자 사업자등록사항

씨에스에너지(주)

업종	제조업
기업규모	중소기업
기업형태	
법인형태	영리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706-81-00640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현재 상태	계속사업자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대표자명	
주요제품	
연매출액	
자본금	
부채	
직원수	0

10. 출장비 산출근거

출발 가산디지털단지역 7호선

1시간 18분 83.4km

도착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대로 246

택시비 약 85,300원 통행료 약 0원

